

의류제품의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방안

문종상 · 송민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필요성

내국물품에 대한 표시(Made in Korea) 제도는 자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자국산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흔히 국경을 통관할 때 부착하는 원산지 표시와는 다르다.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자국산인지 아닌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최종구매자)의 구매행위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산품과 수입제품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행사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내국물품 표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만 규정하고 있고, 원료나 반제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적용할 원산지 판정기준이 없어 제도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형식과 방법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섬유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법령과 기타물품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미국산 제품을 판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제도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합리적인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의 미표시,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증진하는데 있다. 둘째, 외국제품과 수입제품간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국산품과 수입제품간의 국내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나 제조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는데도 그목적이 있다.셋째,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각종 무역제도 운영상에 효율성을 제고하며, 해외 유명브랜드의 현지(한국)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산품에 대한 표시제도를 통하여 기업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국가적으로는 국산제품의 이미지 제고하며, 소비자에게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의류제품의 국산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조사 분석

2.1. 조사개요

본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조사기간은 98. 8. 1~10. 31(3개월), ② 조사대상은 의류(장갑, 양말, 타올, 마직제 의류 등) 업종, ③ 회수율은 300업체에 배포하여 127업체에서 42.3%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④ 표본오차는 95% 신뢰도에 오차의 범위는 ±5%이며 ⑤ 조사기관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및 관련 협회나 조합이다.

섬유제품(특히 의류제품)은 HS 4단위 기준으로 28개군을 망라하고 있고, 전제조업체수의 13.3%, 종업원의 9.3%, 생산액의 3.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를 제품의 중간재 및 완제품의 수입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의류제품의 경쟁력 관계

섬유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입중간재는 72.5%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입 중간재 사용이 전체평균 66.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입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의류제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제품의 경

Table 1. 실태조사의 회수율 (단위 : %)

| 업 종 | 회수업체/배포업체 | 회수율 (%) |
|-------------|-----------|---------|
| 의류(폐선의류 포함) | 81/210 | 38.6 |
| 양말 및 장갑제품 | 19/40 | 47.5 |
| 타올제품 | 18/40 | 45.0 |
| 마제품 | 9/10 | 90.0 |
| 합 계 | 127/300 | 42.3 |

Table 2. 실태조사 대상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 HS분류 | 항 목 | 사업체수 | 종업원수 | 생산액 |
|----------------|------|--------|-----------|-------------|
| 61-62 | 의 류 | 8,381 | 175,438 | 9,715,503 |
| 630260, 630291 | 타 올 | 292 | 4,570 | 538,091 |
| 65 | 모 자류 | 133 | 2,194 | 125,478 |
| 전제조업(B) | - | 97,144 | 2,897,672 | 401,952,973 |
| A/B | - | 13.3 | 9.3 | 3.9 |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8.

Table 3.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비중

| 항 목 | 품목수 | 비 중 | (단위 : %) 전업종대비증감률 |
|-----------------------|-----|------|-------------------|
| 전부 국산만 사용 | 67 | 27.5 | -5.6 |
| 10% 미만 수입중간재를 사용 | 48 | 19.7 | -5.8 |
| 10%이상 30%미만의 수입중간재 사용 | 57 | 23.4 | 0.8 |
| 30%이상 50%미만의 수입중간재 사용 | 54 | 22.1 | 9.1 |
| 50%이상 70%미만 수입중간재 사용 | 8 | 3.3 | 0.8 |
| 70%이상 수입중간재 사용 | 10 | 4.1 | 0.8 |
| 합 계 | 244 | 100 | - |

주: 완제품의 제조원가 기준

Table 4. 중간재 사용에 따른 개도국 및 선진국과의 경쟁력 관계

| | 자사제품의 경쟁우위 | 자사제품의 경쟁열위 | 없음 | 모르겠다 | (단위 : %) 계 |
|---------------|------------|------------|------|------|------------|
| 수입 중간재 사용 | 개도국과의 경쟁관계 | 69.4 | 18.8 | 9.4 | 2.5 100 |
| | 선진국과의 경쟁관계 | 54.8 | 27.4 | 13.4 | 4.5 100 |
| 국산 중간재 사용 | 개도국과의 경쟁관계 | 55.0 | 33.3 | 10.0 | 1.7 100 |
| | 선진국과의 경쟁관계 | 40.0 | 31.7 | 25.0 | 3.3 100 |
| 합 계 | 58.1 | 25.6 | 13.0 | 3.2 | 100 |
| 전조사 대상업체와의 비교 | 10.0 | -5.5 | -2.8 | -1.8 | - |

쟁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후진국에 비해서는 품질경쟁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본 조사결과 우리나라 의류제품은 선진국 보다 개도국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수입중간재 사용이 개도국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간재를 사용한 제품의 국내시장에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력을 69.4%가 비교우위를 진단하였지만, 선진국은 54.8%로 14.6%정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산 중간재만을 사용하는 제품은 수입중간재를 사용하는 업체들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도국에 비해서는 경쟁력 우위가 55%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국산 중간재 사용 업체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내국물품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의류제품의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는 찬성이 78.1%로 나타나 전체적인 찬성을 76%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마직제품, 타올 등에서 강력하게 본 제도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산품과 타국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소비자가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산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며, 우

리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찬성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국내 의류산업 제조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장기적으로 국내제품의 품질개선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원산지 제도도입을 할 때 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주요한 공정기준, 즉 봉제공정을 국내에서 행했을 때 「Made in Korea」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업체들이 5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부가가치기준이 27.3%, 세번 변경기준이 2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가가치기준은 50%~60% 정도 국산 중간재를 사용했을 때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자는 업체가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60~70% 수준에서 결정하자고 응답(28.1%)하였다.

그러나 디자이너에 의해 소규모로 생산되는 패션의류제품은 이러한 제도도입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다소 있었다. 이들 업체들은 패션제품이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국산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누구의 제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원산지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리고 패션성이 강한 제품에 원산지 표시는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다.

2.4. 기타 특징적인 현상들

내국물품에 대한 표시제도의 시행시기와 시행법법 및 대상은 먼저, 의류 등 생활용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 하자는 의견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 국산임을 표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국산임이 인정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62.2%)을 제시했다. 또한 내국물품의 시행시기는 모든 품목에 대해 조속히

Table 5.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의견 (단위 : %)

| 찬 성 | 반 대 | 모르겠다 | 기 타 |
|--------|--------|--------|----------------------|
| 전업종 대비 | 전업종 대비 | 전업종 대비 | 전업종 대비 |
| 78.1 | 2.3 | 14.8 | 3.4 4.7 -7.0 2.3 1.3 |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섬유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판정기관은 공신력을 가지며, 본 제도가 제품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원산지의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에 제재를 하자는 의견이 40.6%를 차지하고 있고, 이 보다 더 강한 손상변경, 허위표시, 미표시까지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35.9%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원산지표시 제도도입을 업계의 선택적 시행보다는 제도와 법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5. 소결

의류제품은 수입중간재의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수입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의류업체들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모두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중간재만을 사용하는 제품은 수입중간재를 사용하는 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후진국 모두 합하여 50% 미만이 경쟁력 우위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의류제품의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는 찬성이 78.1%로 나타나 전체적인 찬성을 76%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국산임이 인정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내국물품의 시행시기는 모든 품목에 대해 조속히 시행하자는 견해를 제시하여 섬유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정기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3. 미국의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3.1. 미국의 내국물품 원산지 제도의 개요

관련법령 : 미국의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 및 판정제도는 특정품목에 관한 개별법령과 기타 물품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구분된다.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제도운영 목적과 품목에 따라 다르다.

일반법령으로는 연방통상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관세부과의 목적으로 관세법(Tariff Act: FTC법 5부와 관세법 15 USC45 A에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용하게 하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NAFTA 등이 있다. 특정품목에 관한 법령으로는 자동차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 구매법(Buy American Act) 등과 섬유제품과 관련된 섬유제품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올제품 라벨링법(The Wool Products Labelling Act), 모피제품라벨링법(Fur Products Labelling Act) 등이 있다.

개별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이외의 물품은 연방통상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연방통상위원회법은 미국 원산지표시를 하는 물품의 허위·오용표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FTC는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나 기만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책임을 FTC법에서 부여받아 미국 원산지 표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 및 단속하고 있다.

FTC는 「모든 또는 사실상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기준을 충족할 때 「Made in USA」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즉 외국산 부품이 미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기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부품비율 등을 명시하여 「Made in USA」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조건부(qualified) Made in USA라 한다.

미국 관세법 시행령 19CFR 134에서는 수입된 물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Tariff Act)은 최종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품이 외국산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면 해당 제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변형은 원재료와 다른 새로운 명칭, 특성과 용도를 갖는 상품을 생산하는 가공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반입된 물품, 즉 미국밖에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했거나 상태가 개선된 물품은 미국을 원산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품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미국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이 결정은 무시되고 부가가치가 발생했거나 상태가 개선된 나라를 원산국으로 인정한다.

미국 원산지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과정 : 미 연방통상위원회의 「Made in USA」 판정기준인 「모든 또는 사실상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1940년대 판례, 즉 완전생산(wholly domestic) 기준을 통하여 확립된 기준이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최종생산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일부 외국산 부품이 사용된 운동화를 「Made in USA」로 광고한 사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동 기준의 재검토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조비용의 75% 이상 또는 모든 주요부품의 최종 실질적인 변형이 미국에서 발생한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95년 7월 11일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97년 12월 1일 정책추진 보고서(Enforcement Policy Statement)를 채택함으로써 총제조비용의 75% 기준안을 철회하고, 과거와 같은 「all or virtually all」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즉 2년여에 걸친 공청회와 소비자 의식조사를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조비용의 75% 이상을 미국부품을 사용하거나 모든 주요부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인정하는 안을 철회하고 종전의 「all or virtually all」 기

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내수시장 잡식에 따른 자국상품의 판매부진과 생산활동의 저조로 실업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FTC, 1997).

미국의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산지 기준을 부가가치기준으로 완화하려는 FTC의 제안은 결국 자국민과 자국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개정안 마련에 실패하고 말았다.

3.2. FTC의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제도(FTC, 1998)

그동안 FTC와 관세청 사이의 원산지 요건을 통합함으로써 양 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지침서를 내놓게 되었다. 본 지침서는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외국산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하더라도 그 제품이 「Made in USA」를 표시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것은 아니며, FTC는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그제품이 미국산 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FTC는 관세청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외국산 제품에 요구할 수 있고, 이부분에 대해 사법권도 가진다.

「Made in USA」 표시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 미국에서 내국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조건없는(unqualified) 「Made in USA」 표시와 조건부(qualified) 「Made in USA」로 구분된다.

여기서 조건없이 「Made in USA」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은 조건없이(without qualification) 「모든 또는 사실상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제조행위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조건부 「Made in USA」 표시요건은 「all or virtually all」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건부으로 수입품의 비중이나 수입된 부품의 제조지역(국가)와 함께 「Made in USA」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대상은 미국은 수출입 물품이든 국내산 물품이든 미국의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눈에 잘 띠는 위치에 그 물품이나 포장용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판독가능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특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섬유, 울, 모피제품, 자동차 등은 반드시 그 제품의 함유량에 대해 미국산 여부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외 다른 대부분의 제품은 그 제품의 총합유량이 미국산인지 여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그들 제품의 총 요구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은 반드시 FTC의 「Made in USA」 정책에 따라야 한다.

한편 FTC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② 일반 소비자가 미국산 보다 외국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확실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미국 소비자가 외국산제품 보다 국산품을 더 선호한다는 시각이 그 근저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광고를 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법에서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미국 원산지 표시에 정책추진보고서(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는 1997년 12월 2일에 미연방거래위원회에서 Made in USA와 또 다른 미국원산지 표시로서 광고와 라벨의 부착에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광고, 라벨링 부착, 또 다른 홍보(promotional materials)를 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모든 거래형태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불명료한 원산지 표시는 관세법이나 미연방통상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시점에서 상품 및 개별포장에, 가능한 한 눈에 잘 띠는 장소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영어로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고의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는 보존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유통과정이나 저장과정에서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또는 사실상의 모든」기준을 충족시 「Made in USA」 표시를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다. 즉 외국산 부품이 미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통상위원회는 「Made in USA」 표시와 관련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만적(deceptive)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다만 상기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부품비율 등을 명시하여 「Made in USA」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조, 조립과정이 미국과 외국에서 나누어져 행해진 경우 미국내 제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총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사례 1: 10%의 수입된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을 때 「Made in USA of imported parts 10%」로 표시할 수 있다. 이는 수입된 부품의 미미하고, 실질적인 변형이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미 연방통상위원회는 「Made in USA」 표시와 관련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산업자원부, 1998).

사례 2: 위원회(FTC)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광고, 라벨, 홍보상의 표현(Impression)에 집중한다. 위원회는 그 제품의 부품(content)과 미국 심볼 또는 지리적인 표시(미국의 국기, 미국의 지도, 공장이나 본사의 미국내 위치)에 따라 독자적으로 미국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문구나 이미지와 연계하여 미국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 Made in USA
 - Our products are American-Made,
 - Made in USA of imported parts 20%
 - Made in USA from Japanese and Taiwanese Components
- 한편 United States, America, U.S.A 등과 특정지역명을 표

시하는 행위인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행위는 원산지 표시로서 부적절하고 판단하였지만, 최근 미국 FTC의 지침서에는 이와 같은 표현도 원산지 표시를 대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들이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지명이나 미국지도를 디자인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이나 포장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반환 과기시키거나, 세관감독하에 재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수입자가 모두 부담한다. 원산지를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채 허위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압류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적 사기인 경우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명화, 1996).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미국 원산지 표시로서 독자적인 미국 브랜드명과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로서 라벨에 그 회사의 미국주소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광고나 라벨을 부착하는데 있어서 사전승인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업들은 「Made in USA」 표시를 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자나 판매상은 그들의 제품이 진실되고 실제적인 한 광고나 라벨의 부착에 있어서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조건없는 Made in USA 표시 :

1) 조건없는 「Made in USA」의 의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에서 내국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조건없는(unqualified) 「Made in USA」 표시와 조건부(qualified) 「Made in USA」로 구분된다. 여기서 조건없이 「Made in USA」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은 조건없이 「모든 또는 사실상 모든(all or virtually all)」 제조행위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ade in USA」 표시 외에 부가적인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ll or virtually all」 이란 어떤 제품의 모든 중요한 부분과 공정이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준은 외국의 부분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100% 미국산 부품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Made in USA」의 표시기준

제조업자나 판매상이 조건없는 「Made in USA」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만들어진 당시에 「Made in USA」 표시를 충족할 만한 「합리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즉,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all or virtually all」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요건에 합당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믿을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Made in USA」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최종적인 조립이나 공정(Final Assembly or Processing)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하고, 총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만든 부품 및 가공비중(Proportion of U.S. Manufa-

cturing Costs)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산 부품의 독립성(Remoteness of Foreign Content)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외국산 부품이 사용된 경우 그 부품이 제품상의 중요도, 수입부품을 투입하여 몇 단계의 공정을 더 거쳐 최종재가 되었는가(수입부분품과 최종재의 공정간 단계), 부품을 투입하여 만든 중간재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가 하는 요소를 고려해서 판정한다.

사례 3 : 어떤 제품이 미국에서 대부분 제조되었지만 총제조비용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산 부품이 수입되었다고 하자. 수입된 부품의 공정이 제품의 전공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는 무시할(negligible)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제품은 조건없는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사례 4 : 탁상용 전등은 Brass와 Tiffany-Style Lampshade를 미국에서 만들고, 수입 반침대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제조되었다고 하자. 수입반침대의 제조비용은 총제조비용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경우 조건없는 「Made in USA」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최종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입 반침대의 중요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수입 반침대가 무시해도 좋은 부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입반침대는 완제품인 탁상용 전등에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며 또한 최종재의 한단계 이전의 공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미국산 부품 비중의 산정방법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제품의 출고가격이나 판매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재료의 총비용, 직접사용 된 노동력, 경상비(manufacture overhead)를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미국산 원산지를 표시하기 전에 이러한 부품이나 중간재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받아야 한다. 미국의 부품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부품비용의 비중과 중요한 외국부분품의 비중을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제품의 부분품 비중이 얼마나 되고, 최종생산과정에서 그 형태가 얼마나 많이 제거되었는가에 의해서 「Made in USA」 표시의 「모든 또는 사실상의 모든」 판정기준이 된다.

사례 5 : 복잡한 제품에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철강(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퍼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철강)은 컴퓨터 제조의 초기 투입물로 사용되고, 이것(철강)은 총비용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파이프(pipe)와 웨치(wrench)와 같은 곳에 투입되는 철강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투입물이다. 여기서 파이프와 웨치에 투입된 철강이 수입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제품의 「all or virtually all」 요건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컴퓨터 원료로서 철강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조건부 Made in USA 표시 :

1) 조건부 「Made in USA」 표시의 요건

조건부(qualified) 「Made in USA」 표시요건은 「all or virtually all」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건부로 수입품의 비중이나 수입된 부품의 제조지역(국가)과 함께 「Made in

USA」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는 개별법령과 일반법령하에서 마련된 다양한 기준으로 case by case로 접근하고 있다는데서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 또한 조건부 원산자표시의 기준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 또한 자의적일 수 있다.

조건부 「Made in USA」 표시요건이란 상품의 국내 부품(content)이나 공정의 범위, 양 또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제품이 전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례 6: 조건부 「Made in USA」 표시의 사례로는 「60% U.S. content」, 「Made in USA of U.S. and imported parts」, 「Couch assembled in USA from Italian Leather and Mexican Frame」 등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조건부 「Made in USA」 표시의 사용

조건부 「Made in USA」 표시는 그 제품이 미국의 부품(content)이나 공정을 포함하고, 조건없는 「Made in USA」 표시요건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조건부 「Made in USA」 표시요건이 조건없는 「Made in USA」 보다 더 많은 국내 부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유의해야 한다. 즉 그 제품은 상당한 정도의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미국내에서의 공정이 이루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부 「Made in USA」 표시는 조건 없는 「Made in USA」 표시요건과 같이 진실되고(truthful), 실제(substantiated)이어야 한다.

3) 특별공정이나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한 제조나 공정이 미국에서 수행되었을 때 원산지 표시와 특별한 부분품이 미국에서 제조되었을 때의 원산지 표시는 진실되고, 실제적이며, 분명해야 한다. 제품의 일반적인 제조가 아닌 특별한 공정이나 부품이 미국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한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일반적 「Produced, Created, Manufactured in U.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특별한 공정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그 제품이 「모든 또는 사실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제품이 외국 원산지라면 제조업자는 관세청의 규칙이나 법령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관세청은 원산지를 나타낼 수 없는 어떤 도시나 지명을 제품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그 표현이 그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아님을 명시하고 「Made in」, 「Product of」 등으로 시작하는 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사례 7: 뉴욕에서 제품을 디자인(특별한 공정)하고 핀란드에 있는 공장에서 blueprint하였을 때 이 라벨에 「Designed in USA- Made in Finland」라는 표시는 전 공정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세청은 그 제품이 핀란드 원산지인 「Made in Finland」, 「Product of

Finland」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표시요건으로서 미국을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공정의 사례로는 「Bound in U.S.-Printed in Turkey」, 「Handcarved in U.S.-Wood from Philipines」, 「Software written in U.S.-Disk Made in India」 등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

사례 8: 한국에서 수입된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골판지 박스에 미국에서 포장되었다고 하자. 포장지 위에 「Made in USA」라고 새기는 것은 그제품의 부품 마저 미국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만적인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Computer Made in Korea-Packaging Made in USA」라는 표시는 합법적으로 제한된 원산지표시로서 가능하다.

4) 미국에서 조립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

외국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제품의 중요한 조립공정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 조립공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을 때 조건없는 「Assembled in USA」로 표시했다고 하자. 이때 조립표시가 정당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최종 실질적 변형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방법은 유효하다. 그러나 단순조립(Screwdriver Assembled)으로는 최종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ssembled in USA」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한편 비교표시는 진실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분명해야 한다. 비교표시 제품은 그 제품의 미국부품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고, 미국 부품과 비교제품간의 분명한 차이를 표시해야 한다.

사례 9: 컴퓨터의 모든 중요한 부품은 모두 수입되고, 단순조립공정을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자. 이때 관세법하에서 실질적인 변형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이때 「Assembled in USA」 표시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사례 10: 어떤 제품의 광고에 「미국 부품이 이전보다 2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의 미국 부품은 이전에는 2%에서 최근에는 4%였다면 이 비교표시는 이전과 최근의 미국부품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기만적이다.

4. 내국물품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분석

이러한 내국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에 대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투입신출률 분석을 통해 수입대체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4.1. 수입대체 효과

국내 제조업자가 「Made in Korea」라는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산원자재를 기준에 투입한 것보다 5% 증가(금액기준)시켜 동금액만큼 수입원자재를 국산원자재로 대체시키는 경우(시나리오 I)와 10% 증가시켜 동

Table 6. 산업별 수입대체 효과

(단위 : 백만원, %)

| 업 종 | 중간재 수입액 | 수입대체효과 | | |
|-----------|------------|--------|---------------|---------------|
| | | 투입비중 | 시나리오 I | 시나리오 II |
| 제조상품 | 2,314,877 | 94.2 | 266,522(11.5) | 456,604(19.7) |
| - 섬유·가죽제품 | 1,898,484 | 77.3 | 186,264(9.8) | 330,448(17.4) |
| 합 계 | 2,456,680 | 100 | 287,986(11.7) | 485,795(19.8) |

주: ()는 수입대체 효과율임.

금액만큼 수입원자재를 국산원자재로 대체시키는 경우(시나리오 II)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위의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류 전체의 중간재 수입액은 1조 8985억인데 이를 5%의 수입대체효과(시나리오 I)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1863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으며, 10%의 수입대체효과(시나리오 II)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3305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세부품목별 수입대체 효과

세부품목별 수입대체효과는 의류부문에서 1,279억원(시나리오 II: 2,162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 이중에서 편직제 의류는 이중에서 직물제 의류가 가장높은데, 시나리오 I일 때 826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편직제 의류가 454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로 보면 직물이 시나리오 I일 때 108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II일 경우는 1980억원으로 나타났다. 섬유사도 시나리오 I일 때 248억원, 시나리오 II일 때 293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입대체효과는 주로 직물부문에서 크게 일어나며 직물제 의류에 체화(embody)되어 나타난다.

4.3. 고용창출 효과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대상품목(분석대상품목) 부문의 1995년도 총고용인원은 61만 7,038명으로 전산업 고용인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자가 「Made in Korea」라는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산원자재를 기준에 투입한 것보다 5% 증가(금액기준)시켜 동 금액만큼 수입원자재를 국산원자재로 대체시키는 경우(시나리오 I)에는 851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국산원자재를 기준에 투입한 것보다 10% 증가시켜 동 금액만큼 수입원자재를 국산원자재로 대체시키는 경우(시나리오 II)에는 1,604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법률적인 검토

대외무역법은 수출입에 관한 법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인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를 대외무역법에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외무역법에 내국물품 원

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에게 불필요한 수입장벽의 제정으로 오해받아 통상마찰의 소지도 안고 있다.

그래서 내국물품 원산지표시제도의 도입은 대외무역법이 아닌 품질경영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정방향은 통상마찰의 최소화를 위해 WTO규범이 허용하는 목적, 즉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보호에 맞게 품질표시대상 공산품과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선정을 통하여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4.5. 지역경제적 효과

한편 원산지 표시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섬유제품은 궁극적으로 수입 중간재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 중간재의 사용 비율을 높인다. 결국 중간재(직물)집산지인 대구경북 섬유업체에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산중간재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판매용으로 Made in Korea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업체에서는 반드시 일정비율(부가가치기준으로 60~70%) 이상의 국산직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

Table 7. 섬유 및 의류상품군의 세부품목별 수입대체효과

(단위 : 백만원, %)

| | 중간재 수입액 | 수입대체효과 | |
|------------|------------|---------------|---------------|
| | | 시나리오 I | 시나리오 II |
| 편직제의류 | 172,324 | 45,402(26.3) | 61,521(35.7) |
| 편직제장신풀 | 94,230 | 7,928(8.4) | 10,549(11.2) |
| 직물제의류 및 기타 | 1,159,473 | 82,586(7.1) | 154,758(13.3) |
| 직물제품 | 180,659 | 36,475(20.2) | 60,700(33.6) |
| 기타 섬유제품 | 107,506 | 17,650(16.4) | 30,226(28.1) |
| 합 계 | 1,714,192 | 190,041(11.1) | 317,754(18.5) |

주: ()는 수입대체 효과율임.

Table 8. 섬유·가죽제품의 가공단계별 수입대체효과

(단위 : 백만원, %)

| | 중간재 수입액 | 수입대체효과 | |
|-----------|------------|--------------|---------------|
| | | 시나리오 I | 시나리오 II |
| 섬유사 | 239,807 | 24,745(10.3) | 29,310(12.2) |
| 직물 | 1,142,967 | 108,152(9.5) | 197,978(17.3) |
| 의류 | 10,063 | 372(3.7) | 717(7.1) |
| 기타 섬유제품 | 102,371 | 3,961(3.9) | 7,913(7.7) |
| 가죽제품 및 모피 | 24,525 | 1,511(6.2) | 2,042(8.3) |
| 합 계 | 1,519,733 | 138,741(9.1) | 237,960(15.7) |

주: ()는 수입대체 효과율임.

구경복의 직물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직물의 내수시장 수요를 활성화시켜 섬유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표시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품목이 섬유제품이라는 것은 위에서 분석되었다. 내국물품 표시제도는 궁극적으로 수입 중간재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 중간재의 사용 비율을 높인다. 이로 인해 고용이 늘어나며, 급속히 와해되는 경공업 제품의 국산 중간재 생산이 늘어난다.

결국 중간재(직물)집산지인 지역 섬유업체에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산중간재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판매용으로 Made in Korea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업체에서는 반드시 일정비율(부가가치기준으로 60~70%) 이상의 국산직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직물의 내수시장 수요를 활성화시켜 섬유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Made in Korea) 제도는 자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자국산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의류제품에 시범적으로 부착한다면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이다.

최근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중저가의 수입품이 급증하면서 합리적인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내국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를 의류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 의류산업의 원산지 관련 실태분석 및 기대효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의류 및 그 관련업종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시장침식과 무분별한 저가제품의 수입, 그리고 인한 국내 제조기반의 와해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업종이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중간재의 사용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산품 인지 외국산인지 판정이 모호한 제품들이다. 이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의 필요성과 표시방법, 판정방법, 판정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HS 4단위 기준으로 28개 품목에서 129 업체가 설문에 응했다.

의류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입중간재는 72.5%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의류제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이것은 수입중간재 사용이 개도국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산 중간재만을 사용하는 제품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제품의 내국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78.1%업체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제도도입을 통해 급속히 붕괴하고 있는 국내 의류산업의 제조기반을 살리고, 국산품과 외국제품의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국산품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국내에서 매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제도를 통해 국내 중간재 사용이 5% 증가한다고 볼 때 섬유 및 의류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대체 효과는 국산 총중간재 수입액인 1조 7,141억 9,200만원의 11.1%에 해당하는 1,900억 4,1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10%의 국산 중간재를 사용한다면 국산 총중간재 수입의 18.5%에 해당하는 3,177억 5,400만원이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내국물품 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입대체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고용창출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 김창태 (1997) 세계통상체제하의 NA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NAFTA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 규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 규정.
- 대한무역진흥공사 (1998) 외국의 내국물품 표시제도.
- 산업자원부 (1996) 미국의 섬유류 신원산지 규정 보고서.
- 산업자원부 (1991) 대외무역법.
- 산업자원부 (1997) WTO · WCO 원산지 규정협상자료(III, IV).
- 생활개혁실천협의회 (1998) 서울시내 수의판매 실태조사.
- 한국무역협회 (1998) 원산지 이론과 실무, p 310.
- 무역협회 · 산업연구원 (1995) WTO 원산지 협정 체결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FTC (1997)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문 종 상(Jong Sang Moon)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경제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전공(박사과정수료)
현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기획조사팀 연구원
Tel. +82-53-560-6683, Fax. +82-53-560-6789
E-mail: jsmoon@textile.or.kr



송 민 규(Min Kyu Song)

승실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University of Georgia (M.S.)
Kansas State University (Ph. D.)
현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연구개발부 선임연구원
Tel. +82-53-6659, Fax. +82-53-560-6677
E-mail: mksong@textile.or.kr